

농업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

-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원의 농업인 인정범위 확대 등 -

농림축산식품부 2019. 02. 19.

◎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, 이하 농식품부)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'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'을 개정·시행('19.2.8~)하였다고 밝혔다.

- '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(농식품부고시)'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신청, 기준,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.
 - 농업인 기준은 「농어업경영체법」상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으로 활용되며, 농업인에 해당되면 농업·농촌 관련 각종 보조·융자사업 지원신청과 조세 감면 등이 가능하다.
 - 금번 개정된 규정 중 주목할 부분은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인정범위의 확대이다.
 - 종전 규정에서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② 「국민연금법」상 지역가입자·임의가입자(임의계속가입자 포함)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·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야만 했다.
 -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오다 퇴직 후에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(연금 보험료 수준 등)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,
 -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.
- * 임의계속가입자 :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직장가입자의 자격만 유지(최대 3년)
- 이에, 관련 규정을 우선허용·사후규제(포괄적 네거티브)로 변경함으로써 "직장인이 아닌" 가족종사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- * 개정내용 : 국민연금법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(단, 18세 이상)

<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상 가입자 종류에 따른 농업인 여부>

구분	가입자 종류		농업인 여부	
			개정 전	개정 후
국민건강 보험법 (제5조, 제6조, 제110조)	직장가입자	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	×	×
	직장가입자 피부양자	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	○	○
	지역가입자	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기입자	○	○
	임의계속 가입자	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직장가입자의 자격만 유지(최대 3년)	×	○
국민 연금법 (제6조부터 제10조까지, 제13조)	사업장가입자	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	×	×
	지역가입자	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	○	○
	임의가입자	사업장가입자·지역가입자가 아닌 자	○	○
	임의계속 가입자	60세가 된 자 중 65세까지 계속 가입자	○	○

- ◎ 이 밖에도 「축산법」, 「농지법」, 「임업진흥법」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관련 기준과의 불일치 사례를 개선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였다.
- 기존에 부화업,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하였으나, 「축산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'가축사육업' 등록·허가자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하고,
- 「농지법」 제2조를 참고하여 농지 1,000제곱미터(기존 3,000제곱미터) 이상에서 조경 수를 식재(조경 목적은 제외)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받도록 개정하였다.
- ◎ 금번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'농산물품질관리원'의 지원(사무소)장에게 방문·우편·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.

* 자세한 신청방법 및 확인절차는 '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' 참고('농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→법령정보→훈령·예규·고시'에서 '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' 검색)
- ◎ 농식품부 관계자는 "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하면서,
- "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업인 확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붙임 1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주요 개정내용

◆ 개정 사유

- 실제 영농활동을 하면서도, 현행 규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현장 민원 발생
 - 특히,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농업인 기준에 대해 개선 필요
- 축산법·농지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기준과 동 고시의 기준이 상이하여 현장 혼선을 초래하는 사항 정비 필요

◆ 주요내용

가.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중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

- 직장인이 아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개정

나.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농업경영주와의 실제 거주 요건 개선

- 농촌·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건 삭제

다. 축산법·농지법 상 농업인 기준과 일치

-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(단, 정액등처리업 제외) 종사자를 농업인으로 인정
-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(조경목적 제외) 생산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인정

라. 임업인 기준요건 확대

- 수실류·약초류 등 임업진흥법에서 인정하는 품목 추가

붙임 2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전후 비교

구분	개정전	개정후
가족 농업인 등록 기준	국민연금법 지역가입자이거나 임의가입자(지역임의계속가입자 포함)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의 부부양자(단, 18세 이상)이거나 지역가입자	⇒ 국민연금법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(단, 18세 미만 제외)
가족 농업인 거주 요건	농업경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원으로서 별지서식으로 영농事實을 확인받은 사람	⇒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서식으로 영농事實을 확인받은 사람
타 법령 일치	[1]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이나 종축업을 등록한 사람 [2] 농지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 생산하는 사람	⇒ [1]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,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[2]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(조경목적 제외) 생산하는 사람
임업인 등록 기준	[1] 대추나무·호두나무 : 1천제곱미터 이상 [2] 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·야생버섯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: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(圃地)를 확보	⇒ [1] 수실류·밭, 잣 제외·약초류·약용류·수목부산물류·관상산림식물류·분재 제외·그 밖의 임산물 : 1천제곱미터 이상 [2] 버섯류·산나물류·분재 : 300제곱미터 이상